

민원 인쇄

인쇄자: 김경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008-0730377
신청일	2020-08-20 14:03:16
신청인	김경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040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39(합정동) 합정빌딩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 관련 제2차 공개 질의서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제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울 회계사)입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2020.7.3.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 관련 공개 질의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대해 2020.7.22. 귀 부의 최종 답변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최종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2차 질의서를 송부하오니, 아래의 회신 시한과 회신처를 참조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시한: 2020.9.3. (목)
회신처: 첨부파일 참조

1. 검찰 지시의 적법성

(1) 제1차 질의서의 질의 취지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검찰이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검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2) 이에 대한 귀 부의 답변

1. 김경울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로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2007-0072687) 중 검찰담당관실 소관인 질의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요지는, 한동훈 차장검사 검찰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 여부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4조의3 제2항제2호의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감찰규정 제5조의2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법무부 검찰담당관실 서동재(02-2110-30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3) 귀 부의 답변에 대한 제2차 질의

대통령령인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감찰관) 제2항 제2호는 법무부 검찰관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해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은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는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조항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감찰규정 제15조(조사의 개시등)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비위 사항 조사의 경우 제5조 및 제5조의2에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검찰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면서 한동훈 차장검사를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

<질의 1-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한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감찰을 지시한 것은 동 감찰규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지시가 아닙니까?

또한 귀 부는 답변에서 본 건 감찰이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고 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함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소위 ‘검언유착’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선 본 건 감찰 지시 이전인 2020.6.18. 추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간의 질의응답>

○ 박범계 위원

-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지금 그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맞습니까?

(중략)

-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중략)

○ 법무부장관 추미애

- 일단은 대체로 감찰에서 직무감찰 도중에 여러 비위나 법령 위반이 있다면 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로 넘기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 상황을 보고서 또 그때 감찰을 재개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출처: 제379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2020.6.18.) pp.11~12

위 질의응답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의원은 정확히 소위 ‘검언유착’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대상으로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검찰 간의 관계에 대해 추 법무부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을 중단하고”라 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이던 검찰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을 개시하거나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구체적인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검찰’에 해당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은 이런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었고, 국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6.20. 법무부에 의한 직접 검찰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검찰을 지시한 직후인 2020.7.2.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내서 소위 ‘검언유착’ 수사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

<질의 1-2> 추미애 법무부장이 본 건 검찰을 지시하기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본 건 검찰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검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귀 부에서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2. 전보조치의 적법성

(1) 제1차 질의서의 질의 취지

추미애 법무부장은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를 대통령에 제청하기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2) 귀 부의 답변

1. (중략)

2.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략) 한동훈 검사는 위 절차에 따라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3) 귀 부의 답변에 대한 제2차 질의

귀 부는 답변에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전보조치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추미애 법무부장이 본 건 전보조치(인사 발령)와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

<질의 2-1> 추미애 법무부장은 본 건 전보조치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만일 들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들었습니까?

3.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

(1) 제1차 질의서의 질의 취지

<질의 취지 1> 본 건 지휘서신은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까?

<질의 취지 2> 본 건 지휘서신은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까?

(2) 귀 부의 답변

1. (중략)

2.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1AA-2007-0072687)를 통하여, (중략)

3. 먼저, 본 건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추지로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검찰총장을 지휘한 것이 분명하고, 검찰청법의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습니다.

4. 또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채널A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중략)

(3) 귀 부의 답변에 대한 제2차 질의

본 건 지휘서신은 아래의 인용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두 가지 지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제1차 질의서가 질의의 대상으로 한 것은 두 번째 지휘 사항이었습니다.

<본 건 지휘서신의 두 가지 지휘 사항>

1. (중략)

2.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그런데 귀 부의 답변은 “검찰총장이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하여 마치 제1차 질의서가 본 건 지휘서신의 첫 번째 지휘 사항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에 대하여 질의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귀 부의 답변이 지휘서신의 취지라고 요약한 내용은 실제 두 번째 지휘 사항의 내용이나 함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 부의 답변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두 번째 지휘 사항을 “등 필요한 조치”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휘 사항은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표현으로 얼버무릴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차 질의서는 이러한 두 번째 지휘 사항의 실질이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이나 동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인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부는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배제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가 윤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의 지휘감독까지 받지 않도록 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 모두가 한 검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

<질의 3-1> 본 건 지휘서신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질의 3-2> 본 건 지휘서신은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질의 3-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를 들어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까지 사실상 금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ED200820_공문05+질의서_법무부_‘검언유착’사건_수사_관련_제2차_공개_질의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법무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8-0739881
접수일	2020-08-20 14:57:32
담당자(연락처)	정찬철()
처리에정일	2020-09-08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0-08-27 17:48:1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김경울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로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2008-0730377) 중 검찰담당관실 소관인 질의1-1 및 1-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요지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감찰규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감찰을 지시한 것은 동 감찰규정 제15조 제1항 위반여부와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감찰규정 제5조의2, 제15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찰이 착수되었고, 감찰 사건에 있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법무부 검찰담당관실 정찬철(02-2110-30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인쇄